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(대표 발의)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(안 제16조제4항)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5항)
- 주요 업무 수행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7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에서 ‘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요정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¹⁾를 추진하며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6조제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<현 행>	<개 선>
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: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	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10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
1) **현행** 재직기간별 11일~21일 연가 차등 부여 → **개선** 저연차 구간 연가 확대

- 안 제16조제5항에서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 근무 처우를 개선하며 공직 적응을 도모하고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.

※ 새내기 특별휴가: 5일 부여, 5년 이내에 분할 사용 가능

- 안 제16조제7항에서는 장기간 격무 또는 선거사무 등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의정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,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공무원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 진작 및 조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